성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

1. 제 안 자: 성 주 군 수

2. 개정이유

○ 인구정책의 컨트롤타워를 구축 및 역량을 집중·강화하여 인구감소에 대해 대응체계를 강화하고자 사무를 조정하고자 하며,
○ 가야산역사신화공원의 준공에 따라 그 관리업무를 산림과로 이관하여 시설관리업무에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○ 사무이관(안 제4조)

현행부서	담당사무		이관부서
기획감사실	통계관련 사무	⇒	총 무 과
보 건 소	인구정책 전반에 관한 사무		기획감사실
문화관광과	가야산역사신화공원 운영 및 관리전반		산 림 과

4. 참고사항

○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 제8조, 제9조
○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○ 규제심사 : 해당 없음 [기획감사실-9470(2017.10.20.)]
○ 성별영향평가 : 제외대상(「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령」 제2조제2항제3호)
○ 입법예고 : 의견 없음(예고기간 : 2017.10.19. ~ 2017.11.08.)

5. 검토의견

○ 본 개정 조례안은 인구정책의 컨트롤타워 구축 및 역량을 강화하고 가야산역사신화공원 준공에 따른 시설관리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부서 간 업무를 조정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써

○ 주요 개정내용으로는

- 기획감사실의 통계관련 업무를 총무과로 이관하고, 보건소의 인구정책 전반에 관한 사무는 기획감사실로, 문화관광과의 가야산역사신화공원 운영 및 관리 전반에 관한 사무는 산림과로 이관하는 내용입니다.

○ 법리 검토결과 관련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입법 입안 심사기준에 합당하며 인구감소에 따른 대응체계 강화와 시설관리 업무의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본 조례를 개정·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.